

의료인 성범죄 징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김 상 구

의료인 성범죄 징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도 손 명 세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김 상 구

김상구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孫 明世 
심사위원 金 昭 允 
심사위원 李 日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3년 12월 일

의료인 성범죄 징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목 차

국문요약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방법	3
1) 델파이분석	
2) 연구참여자 선정	
3) 자료수집	
4) 연구의 틀	
II. 성범죄 징계제도	8
1. 징계의 정의	8
2. 성범죄에 대한 징계제도	8
III. 의료인 성범죄 징계제도 현황	11
1. 의료법상 면허 제한	11
1) 의료법상 성범죄 제재규정 미약	
2) 의료법상 성범죄자 면허제한 시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	14
1) 근거법령 및 연혁	
2) 취업제한의 법적 성격	
3) 성범죄의 종류	
4) 취업제한 대상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범위	
5) 성범죄경력 확인	
6) 취업제한기간 적용시점	
7) 해외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IV. 의료인과 타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제도 비교	21
1. 의사단체 자율징계제도	21
1) 자율징계의 정의	
2) 중앙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 타 전문가단체 자율징계제도	24
3. 의사 성범죄에 대한 전문가단체 자율징계적 해결	27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
1. 델파이 분석	29
1) 연구결과	
2) 연구의 제한점	
2. 문제점	35
1) 전문가 직종간 형평성 측면	
2) 법 체계적 타당성 측면	
3) 비례의 원칙 위반 측면	
4) 소급효 금지 위반 측면	
3. 개선방안	46
1)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	
2) 의료법에 의한 성범죄 의사 면허규제	
VI. 결론	52
참고문헌	54
부록	55
영문초록	59

표 목차

<표 1>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및 응답현황	5
<표 2>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14
<표 3> 미국 각주의 취업제한 내용	19
<표 4>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성범죄 징계결정례	24
<표 5> 전문가단체별 징계권 비교	25
<표 6> 전문가단체별 징계의 종류와 사유	26
<표 7> 아청법 개선방안 회신의견 현황	31
<표 8> 텔파이 2차 설문조사에 따른 순위 결과	34
<표 9> 의사, 변호사간 성범죄 처벌 비교	40
<표 10> 의료법 개정방안	51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틀	7
<그림 2>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23

국문요약

의료인 성범죄 징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의사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고, 성범죄를 범한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한 법개정으로 이어졌는데, 실제로 지난 국회에서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법은 범죄의 종류의 행위수단, 비난가능성을 불문하고 경미한 성추행의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을 제한함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며, 타 전문가직역과 비교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 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한의 현황과 전문가 직역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알아보고, 해외 입법사례 등을 참고해보고자 하였으며, 델파이 조사는 의사 성범죄에 대한 현행 아청법상 취업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예측해 보기 위해 2013. 11. 4. ~ 11. 22.까지 3주간 두 차례에 걸쳐 의료분야 관련 전문가 총 23명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1차 설문 분석결과 성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경중에 관계없이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아청법상 취업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23명 중 16명(69.57%)은 이러한 취업제한제도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성범죄의 경중 또는 형벌의 종류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단계적

으로 하자(8명)', '아동과 청소년이 출입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취업제한을 해야 한다(5명)',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제외하자(4명)' 등의 순위를 보였다.

2차 조사에서는 위 개선방안 9개 항목에 대해 중요도 순으로 순위를 정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성범죄의 경중이나 형벌의 종류의 따라 취업제한도 차등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그 다음 순으로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를 아청법으로 처벌하지 말고 의료법에서 면허에 대한 제한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현행 아청법상 취업제한 제도가 타 전문가직역과 의사에 대한 관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며, 비례의 원칙 및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자격과 면허에 관한 사항은 아청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첫째, 성범죄의 경중(또는 형벌의 종류)에 따라 차등 있는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취업제한이 되도록 하며, 취업제한 기간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처분권자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아청법상의 취업제한 제도에 대체하여 의료법에 의해 의사의 성범죄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성범죄 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으로서 해외 선진국에서 사례를 볼 수 있는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의 설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좋은 의료행위 기준(Good Medical Practice, GMP)'을 참고한 의료인 자율기준으로서의 진료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성범죄, 의사면허, 아청법, 취업제한, 형평성, 비례의 원칙, 품위훼손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여러 전문가 직업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의료인 특히, 의사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여전히 높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직업군으로서 의료인이 사회적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의사에 의한 성범죄 사건¹⁾은 국민과 환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이르렀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져, 국회와 정부, 사회는 성범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당시 사회이슈로 번졌던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최영희 국회의원은 “의사의 경우 환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일이 많고, 특히 마취를 통해 무의식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고, 의료기관에 취업제한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²⁾”면서 「의료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이라고 한다)을 국회에 발의한 바, 성범죄를 범한 의사가 일정기간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아청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 의사에 대한 아청법상 취업제한제

1) 2007년 경남에서 한 의사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수면마취 상태임을 이용해 성추행하였고, 2011년 고려대 일부 의대생들은 동기인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였으며, 급기야 2012년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10여가지 약물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맺고, 그가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2) 2011. 9. 6. 최영희 국회의원 보도자료. “성범죄자, 의사면허 취득 제한한다!”

도는 실질적으로 의사의 면허가 제한되는 효력을 갖고 있어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그 반대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2013. 9. 27. 국회 박인숙 의원실의 주최로 개최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합리적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취업제한제도가 ①성 범죄를 행한 의료인을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병리와 등까지 포함됨) ②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③의료기관에서의 범죄경력 조회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 ④환자와의 분쟁 증가 및 방어진료 확산의 부작용 발생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임병석, 2013).

의료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관해 아직까지는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내지 취업제한 기관의 확대 의견을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김옥이 전 국회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201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행법은 취업제한 시설, 기관과 ‘인접한’ 사업장에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근무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 있는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입법제안했다(김옥이, 2010).

또한 중앙법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및 취업제한제도의 발전방향 연구」에서는 “취업제한은 해당 성범죄 중 중대한 범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시설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업무의 특성 및 다양한 법률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이정훈 외 2명, 2012).

그러나, 의료인이 범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합당한 처벌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 또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타 전문가직역에 있어서 면허제한의 수준과도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 어떤 종류의 처벌을 어느 정도로 내리는 것이 타 전문가직종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는 것인지, 아울러 현행 제도상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1) 델파이 분석

본 연구는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예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델파이(Delphi-Technique) 기법을 활용한 조사연구이다.

“델파이 기법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교환을 통해 발전

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방법의 하나다.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안을 탐색하는 것은 전문지식의 부족, 상황 및 유사 사례에 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정책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주관적·직관적 방법으로 델파이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노승용, 2006).

의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과 적정성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응답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델파이 기법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전문가 집단)는 상이한 전문성을 지닌 집단으로서, 의료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의료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원, 보건의료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보좌관, 의료분야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의사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및 의료분야 기사를 다루는 언론인을 설문그룹으로 선정했다.

또한 의사의 성범죄와 관련된 본 논문의 특성상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포함하였으며, 전체 참여자 23명 중 11명(47.8%)을 여성으로 구성함으로써 성범죄를 바라보는 특정 성별만의 입장이 대거 반영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델파이 기법을 통한 연구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①전문가의 선정과 ②라운드 횟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승용, 2006), 전문가 인원수의 선정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전문가의 수가 작은 그룹이 효과적이라는 주장, 전문가의 수가 많아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주장, 그리고 전문가의 수가 15명 정도이면 중위수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그룹의 전문가들 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그룹의 일반적 특성과 각 설문 차수별 응답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및 응답현황

구 분	인원수	실제 응답인원		비 고
		1차 설문	2차 설문	
의 사	2	2	2	
간호사	4	4	4	여성 4명
국회 입법보좌관	2	2	2	여성 1명
보건복지부 공무원	3	3	3	여성 1명
변호사	3	3	3	여성 1명
의협 윤리위원회위원	2	2	2	
의료정책 연구원	4	4	4	여성 2명
언론인	3	3	3	여성 2명
계	23	23	23	여성 11명

3) 자료수집

연구실시에 앞서 참고문헌과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검토된 사항에 대해 먼저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고, 2013. 11. 4. ~ 11. 22.에 걸쳐 3주간 설문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총 설문지 배포횟수는 2차례로, 제1차 개방형 질문과 제2차 폐쇄형 질문의 배포와 분석에 소요된 기간은 25일이다.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시행해 본 후, 전체 연구참

여 전문가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구체적인 연구목적과 텔파이 조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본 연구의 목적과 텔파이 기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판단된 2013. 11. 4.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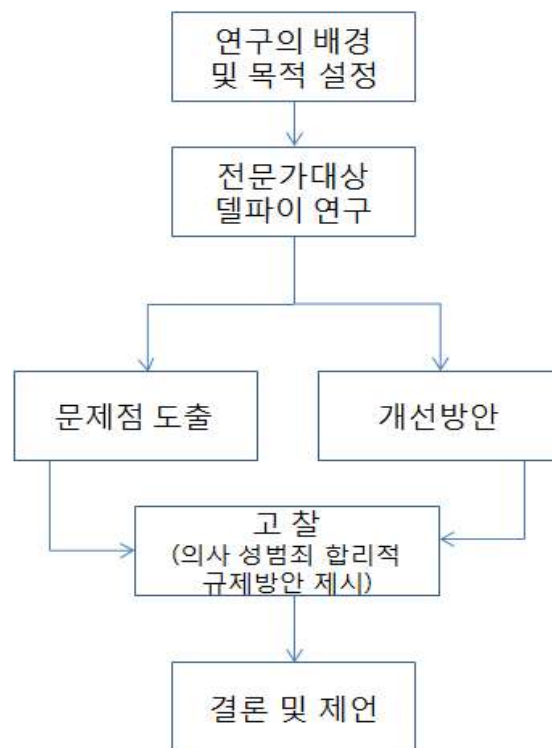
1차 설문에서는 객관적인 결과예측이 가능하도록 연구 대상자들이 상호간 접촉하지 않고 미리 개발한 개방형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진행된 2차 설문에서는 1차 개방형 설문으로 수집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무작위 목록으로 제시하여, 이를 통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선방안으로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들을 무작위로 나열하고 자신의 의견에 따라 중요도 순으로 순위를 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연구과정에서 최선의 예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규제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추가적으로 기술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연구의 실시애 앞서 각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자료수집에 있어서 최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응답의 편의를 제공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과 제시된 의견이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자료의 누출방지와 개인정보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했다.

4) 연구의 틀

본 연구에 있어서의 연구의 틀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틀

II. 성범죄 징계제도

1. 징계의 정의

“징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직 안에서 규율에 위반하여 그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하는 것으로 i) 일정한 조직을 전제로 ii) 규율을 위반한 자에게 iii) 제재를 가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한다. 따라서 징계권은 조직의 자율성을 행사하는 단체는 징계 여부 및 징계 절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가질 수 밖에 없다(이은희, 2006)”.

“이러한 징계에 의한 제재벌을 징계벌 또는 징벌이라 하고 그 과벌의 원인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를 징계사유 또는 징계사범이라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징계사범에 대하여 징계벌을 과할 수 있는 권력을 징계권이라 하고 이 벌을 받지 않으면 안될 지위를 징계책임이라고 한다(박승일, 2006)”.

2. 성범죄에 대한 징계제도

“성범죄와 관련한 용어에는 ‘성범죄’,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개인에 따라 성과 폭력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가치관에 따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폭력이고 어떠한 행위들이 애정의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혜정,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크게 ①(준)강간 및 (준)강제추행과 같이 폭행·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②폭행·협박은 사용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음란성 언어 및 통신매체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범하는 범죄, ③성매매와 같이 피해여

성과 금전적 거래를 통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음으로써 범하는 범죄로 분류하고 그 중에 폭행·협박을 사용하거나 위계·위력을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를 성폭력 범죄로 보는 견해가 있다(한남현, 2008).

다만, 중요한 점은 이렇듯 성범죄의 개념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법 등 법률로 구성요건과 처벌을 규정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범죄자에 대한 징계 혹은 처벌은 법령에 근거한 사법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선 사법적인 제재는 가장 대표적으로 형법이 성범죄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형법은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서 제241조(간통),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각 죄에 대한 처벌의 종류와 형량은 개별 조문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형법이 정하고 있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 외에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제도(치료감호법),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제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다양한 유형의 사법적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성범죄에 대한 행정적 제재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있는데 각 제재방안에 대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김옥이, 2010).

Ⅲ. 의료인 성범죄 징계제도 현황

의사가 성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크게 해당 성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등 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사법적’인 규제 이외에 의료법상 면허제한(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아청법에 의한 취업제한이라는 ‘행정적’인 규제가 있다.

1. 의료법상 면허 제한

1) 의료법상 성범죄 제재규정 미약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료법은 그 면허에 대한 제한으로 ‘면허 취소’, ‘자격정지’, ‘면허의 효력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면허의 효력정지는 지역별·연령별로 의료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2011. 4. 28. 의료법 개정(법률 제10609호)에서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이러한 미신고 의료인에 대해서만 면허의 신고시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동법 제66조제4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성범죄에 따른 면허의 제한과는 거리가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자격정지의 종류와 사유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의료인 면허의 취소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법정화(제65조제1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면허취소사유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제8조 각 호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의료인의 면허결격사유

3)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조 각호에 해당할 경우는 필수적 면허취소사유로 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역과 달리 의료인에 대한 면허결격사유에서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ii)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iii)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iv)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2) 의료인 면허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의료법 제66조제1항). 면허 자격정지기간은 보통 1년이내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의료인의 면허는 다시 회복된다.

i)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이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⁴⁾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의료법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법시행령 제32조가 ‘품위훼손행위’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1항제2호에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의료인단체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각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의료법 제66조의2).

ii)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일명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를 말하며, 이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iii)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때.

iv)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에 관한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v)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vi)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겐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vii)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특칙이 있다.

viii)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소위 리베이트 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도 부과된다.

ix)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법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으로 정한다.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낙태나 허위진단서작성 등 형법상의 일부 규정 또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사의 성범죄는 ‘면허취소’가 될 수 없다. 다만, 의료행위 중에 환자를 성추행하는 등 의사가 성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비도덕적 진료’를 사유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32)이어서 성범죄자인 의사에 대한 적절한 면허규제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2) 의료법상 성범죄자 면허제한 시도

위와 같은 현실의 문제로 인해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2012. 8. 14.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개정안(의안번호 1173호), 2012. 9. 3.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개정안(의안번호 1492호), 2012. 9. 14. 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개정안(의안번호 1816호)이 그것이다.

<표 2>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이언주 의원안	이우현 의원안	안효대 의원안
개정요지	-의료인 면허결격사유에 형법 제161조, 제250조를 추가함 -형법 제161조, 제250조의 경우에는 면허재교부 사유에서 제외함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추가된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10년간 면허재교부를 금지함	의료인 면허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제12조·제13조를 추가함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

1) 근거법령 및 연혁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6조제1항).

이 같은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2005. 12. 29 동법 개정(시행 2006. 6. 30)시 도입되었으며, 미국 등에서 그 운영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2010. 4. 15.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히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2012. 2. 1., 법률 제11287호 일부개정 당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이 추가되어 같은 해 8. 2.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취업제한의 법적 성격

아청법상 취업제한제도는 현행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특성에서 형벌인지 보안처분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도 취업제한의 법적 성격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바도 없다.

이에 신상공개제도 내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한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할 때, “취업제한은 성폭력범죄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제재수단이지는 하지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아니다. 취업제한은 형벌과 별개의 제재수단이며 10년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정훈 외 2명, 2012).

3) 성범죄의 종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아청법 제2조제2호).

i) 아청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ii)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iii)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iv)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성인대상 성범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청법상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고, 아청법 시행규칙 서식 3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뒷면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명시된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2010. 4. 15. 이후)로서 다음과 같다.

i)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ii)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iii)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iv)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v)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4) 취업제한 대상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범위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취업제한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형’은 형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

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말한다. 다만, 선고유예자, 기소유예자, 공소기각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타 기관의 직원이라도 파견 형태 등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⁵⁾.

의료기관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 포함)가 포함된다. 한편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여부, 진료과목의 여부, 의료기관 종별 구분 등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성범죄경력 확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56조제3항).

6) 취업제한기간 적용시점

성범죄에 대해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의료기관이 포함된 2012. 2. 1. 개정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기로 함에 따라 행위 당시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던 자라도 이 법 시행일인 2012. 8. 2. 이후 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2012. 12. 18. 전부개정(법률 제11572호, 시행 2013. 6. 19) 당시 부칙 제7조로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됨으

5)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p10.

로써, 여전히 법률소급에 의한 취업제한 가능성은 남게 되었다.

7) 해외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미국의 각 주에서는 메건법(Megan's Law)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신상정보공개와 한 형태로 거주제한을 두거나 취업제한을 두고 있다. 일부 주와 지역사회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학교, 탁아소, 놀이터, 공공수영장, 비디오게임장, 공공운동장 등과 그 인근에서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김옥이, 2010).”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담고 있는 주는 그리 많지 않고, 우리나라와 같이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조문을 갖고 있는 주는 없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간호사가 성범죄를 범할 경우 간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에서 그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정훈 외 2명, 2012).”

다음은 미국의 각 주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내용이다(김옥이, 2010).

<표 3> 미국 각주의 취업제한 내용

주	취업제한 대상자	취업제한 범위	기간	해제 가능성
Alabama	성범죄자	학교 또는 어린이 관련 시설 200피트 이내	종신	없음
	어린이와 관련된 성범죄자	학교, 어린이관련시설, 공원, 운동장, 또는 체육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장 또는 시설 주변의 500피트 이내	종신	없음
Florida	성범죄자	사업장, 학교, 탁아소, 공원, 놀이터 또는 그 외의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모이는 장소	30년~종신	있음

주	취업제한 대상자	취업제한 범위	기간	해제 가능성
Georgia	성범죄자로 등록이 요구되는 사람	어린이 보호시설, 학교 또는 교회 1,000피트 이내	10년~종신	있음
	위험한 성범죄자	사회적 약자(minor)가 모이는 장소 1,000피트 이내	종신	없음
Idaho	성범죄자로 등록이 요구되는 사람	탁아소, 단체 탁아시설, 가족 탁아가정	10년~종신	있음
Indiana	성폭력 범죄자	학교 사유지, 청소년센터, 공원	10년~종신	있음
Michigan	성범죄자로 등록이 요구되는 사람	학교 사유지에서 1,000피트 이내	10년~종신	있음
Oklahoma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	어린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 또는 학교 사업장	10년~종신	있음
Tennessee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성범죄 등록이 요구되는 사람	학교, 탁아소, 어린이보호시설, 공원, 놀이터, 휴게시설, 운동장	10년~종신	있음
Virginia	성인으로서 피해자보다 3살 많은 성범죄자	공립 또는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탁아소 사유지	종신	없음

IV. 의료인과 타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제도 비교

1. 의사단체 자율징계제도

1) 자율규제 및 자율징계의 정의

“자율규제는 정부(행정)규제의 상대개념이다. 자율규제란 규제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령상 자신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정부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권력작용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현두륜, 2010).” 자율징계는 자율규제와 동일어로 사용된다.

“전문가단체의 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가 및 사회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부터 전문직 종사자들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인한 오류로부터 국가 혹은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이은희, 2006).”

“전문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문직을 정부가 규제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일정 부분에 있어 전문가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단체에서 행하는 징계란 주로 그 조직의 규율을 위반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나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소속 회원에 대하여 취하는 제재조치이다. 대부분의 전문직 단체가 이러한 취지에서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 있어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심영주 외 1인, 2006).”

2) 중앙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라고 한다) 내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1962년이며, 의사윤리규정을 제정하고 6명의 윤리위원을 선임하여 ‘의료윤리위원회’로 출발했다. 동 위원회는 초기 의협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다가 1966년 정관개정에서 비로소 정식 상설위원회로 명문화되었고, 그 업무도 주로 ‘정관위배사항’과 ‘의도양양’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다가 1974년 정관개정부터 ‘의사윤리위배사항’도 다룰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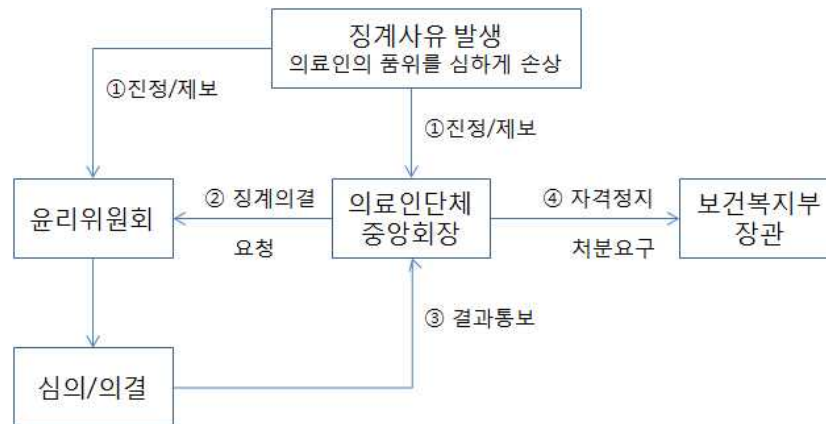
2011. 4.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10609호, 시행 2012. 4. 29)으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요구권이 부여되고, 이를 위한 윤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중앙윤리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됐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협 정관이 2013. 4. 28. 개정되어 2013. 7. 19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비의료인 4인을 포함하여 징계심의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

현재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i)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ii)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iii) 위반금 부과 iv) 경고 및 시정 지시」다. 다만, 징계의 종류 중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징계는 회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행정처분 의뢰’에는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요구가 포함된다(의협 정관 제59조 제1항).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정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중앙윤리위원회규정’(제14조)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
 - 가. 정관상의 의무를 태만한 행위
 - 나. 본회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2. 의사윤리위배행위
 - 가.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 나. 비과학적, 비도덕적 행위
 - 다.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 라. 기타 의료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
- 3. 본회 명예를 훼손한 행위
 - 가. 본회 및 의사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 4.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 가.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 나. 타 회원의 진료에 관하여 타당성 없는 비방이나 평론을 하는 행위

의료법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2008. 4월 성범죄를 범한 양 모 회원과 황 모 회원 두 의료인에 대해 최고수준의 징계종류인 ‘3년간 회원권리정지’를 결정했다⁶⁾. 양 모 회원은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을 성추행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특별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또한 황 모 회원은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황 모 회원이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공판 결과, 준강간죄에서 강간죄로 죄명이 변경되고, 형량은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경감된 바 있다.

6)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성폭행 등 회원 2명 ‘3년 권리정지’ … 협회 최고 징계수위 결정” 2008.5.20.

중앙윤리위원회는 황 모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의 중한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중앙윤리위원회규정상 ‘제명’처분이 없으므로, 최고의 징계인 ‘회원권리정지’ 3년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표 4>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성범죄 징계결정례

피심의인	징계결정	징계종류	권리정지기간	비고
양 모 회원	2008. 4. 30. 제18차 중앙윤리위원회	3년간 회원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의뢰	2008. 4. 30 ~2011. 4. 29	징계종류로서 ‘제명’ 필요성 대두
황 모 회원				

2. 타 전문가단체 자율징계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단체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이 있고, 회원이 중양회에 미등록시 일정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 (현두륜, 2010).

<표 5> 전문가단체별 징계권 비교

구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의사·약사
중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설립근거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건축사법	의료법, 약사법
설립,가입	강제	강제	강제	임의	강제
회원징계권	있음	있음(징계요구권)	있음(제명권)	없음(내부징계)	없음(내부징계)
개업시 등록의무	협회에 등록 (협회의 심사권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협회에 위탁)	기획재정부에 등록(등록변경사항은 협회를 경유)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신고	지방자치단체 신고, 허가
휴·폐업 사무소이전 신고의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협회에 신고해야	금융위원회에 신고(협회에 위탁)	소속 협회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신고	지방자치단체 신고
협회 미등록시	- 업무수행 불가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수행 불가 - 500만원 이하 벌금	사실상 업무수행 규제	없음	없음

현행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관련 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현두륜, 2010).

<표 6> 전문가단체별 징계의 종류와 사유

구분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징계권한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법무부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만 관여)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협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여)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협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여)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협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여)
협회 징계요구권 및 제명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징계개시 신청가능	협회는 회원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음(시행령 제17조의3)	징계요구권 있음	제명 및 징계요구권 있음
징계종류	1.영구제명 2.제명 3.3년이하 정직 4.3천만원이하 과태료 5.견책	1.견책 2.500만원이하 과태료 3.2년이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직무정지 4.등록취소	1.등록취소 2.2년이하의 직무정지 3.1년이하의 일부 직무정지 4.견책	1.등록취소 2.2년이하의 직무정지 3.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견책
징계사유	-영구제명: 직무관련 범죄로 2회 이상 집행유예형 이상 확정, 2회이상 정직처분 후 징계사유 발생 -기타징계: 변호사법 위반, 회칙 위반, 품위손상	변리사법 또는 변리사법에 의한 명령 위반	-회계사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위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 -공인회계사 회칙위반 -직무 불문하고 품위 손상	-세무사법위반 -세무사회 회칙 위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고 한다)의 경우 1995.12.29. 법률 제5055호로 변호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징계권이 완전히 중앙회로 이관되어 징계권의 일원화가 실현되었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변협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때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변호사로서의 업무개시 조건으로 변협에 대한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점이 의협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 변협의 경우 소속 회원의 근무처와 소재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자율징계권 실행의 기초가 탄탄하게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 다섯 가지 즉,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변호사법 제90조). 변협의 경우 징계를 받게 된 변호사는 변호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실질적인 징계효력을 갖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또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명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법조일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변호사 자격부여 및 업무활동의 허용에 관한 최종권한 및 징계권한 모두 주 최고법원에 귀속되며, 독일의 변호사징계제도는 당해 변호사가 소속하는 변호사회 이사회에 의한 자치적 징계(가벼운 징계)와 변호사재판권에 의한 각급 법원의 징계로 양분되고, 일본의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가 1차 징계권을,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차 징계권을 가지며, 동경고등재판소에 불복할 수 있다(채근직, 2010).”

3. 의사 성범죄에 대한 전문가단체 자율징계적 해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성범죄와 그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성범죄자는 일반 국민 누구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문가 직역에 있어서는 그 윤리적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법적인 처벌 이외에 자율정화적 차원에서의 징계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에도 의료법에 근거를 둔 중앙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회원권리정지 등 자율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대한의사협회에는 ‘면허취소에 관한 처분 요구권’이나 ‘업무정지 등 잠정적인 처분에 관한 요구권’은 부여되지 않았고, 특히 변호사협회와 같이 소속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에는 그 소속 회원들이 변호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윤리위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제명, 영구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통해 해당 변호사가 징계의 기간동안 변호사업을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의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가 왜곡된 윤리의식에 기하여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타율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실질적인 자율정화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단순한 ‘행정처분 요구권’이 아닌,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면허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듯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전문가단체의 윤리성 등 질적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델파이 분석

1)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표인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전문가를 활용한 델파이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추출한 내용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미래예측을 제시했다.

본 델파이 조사에는 1, 2차 모두 23명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으며, 성별은 남자 12명(52.17%), 여자 11명(47.82%)이고, 연령대로는 20대 2명(8.7%), 30대 10명(43.48%), 40대 10명(43.48%), 50대 1명(4.34%)이다.

1차 설문에서는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아청법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부록 참조). 2차 설문에서는 1차에서 취합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여 다른 전문가들의 답변을 상호 비교하도록 하면서 1차 설문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히도록 하고,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제시하여 문항별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소수의견이 최선의 미래예측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기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아청법 개정을 위한 추가의견이나 조언’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요청했다(부록 참조).

(1) 델파이 1차 설문 분석결과

① 아청법상 취업제한제도의 적정성

본 연구의 1차 설문 분석결과 성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경중에 관계없이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아청법상 취업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 23명 중 20명(86.95%)은 이러한 취업제한제도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는데, 이중 4명은 오히려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좀 더 강력한 법 규제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한 것이어서, 이들 4명의 답변은 우선 동 취업제한제도가 성범죄 의사에 대한 적절한 처벌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로 적절하다는 의견은 7명(30.43%),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16명(69.57%)으로 집계했다.

② 아청법상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

이어서,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다. 델파이 1차 설문은 개방형 질문인 관계로 중복응답이 발생하였으며, 응답자 23명 중 2명은 1번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동 문항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문항에 대한 응답자 수는 21명임을 먼저 밝혀 둔다.

개선방안으로 가장 많은 응답 빈도수를 보인 것은 ‘성범죄의 경중(또는 징역, 금고, 벌금 등 형벌의 종류)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두 8명이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아청법의 취지에 맞게 아동과 청소년이 출입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취업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이 있었다. 그리고 아청법의 취지에 맞게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제외하자는 의견과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4명이 있었다. 성범죄 의사에 대해서는 아청법상 취업제한이 아니라 의료법으로 규정하여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3명이었다.

이상의 회신의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아청법 개선방안 회신의견 현황

영역	회신 의견	응답자수(%)	순위
아청법 개선방안	성인대상 성범죄를 취업제한사유에서 제외함	4 (19.04)	3
	취업제한 기관을 아동청소년 출입과 관련된 기관으로 제한함	5 (23.8)	2
	의료인 취업제한 규정을 ‘아청법’이 아닌 ‘의료법’에 규정함	3 (14.28)	5
	독립적인 의료인 면허관리기구를 신설함	2 (9.52)	6
	의료인 이외 모든 직종의 직업군에 동일하게 적용함	4 (19.04)	3
	제한을 단계적으로 실시(1차 경고, 재위반시 취업제한 등)	1 (4.76)	8
	성범죄의 경중(또는 형벌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함	8 (38.09)	1
	취업제한 대상을 아청법 개정 이후 성범죄자로 한정함	1 (4.76)	8
	취업제한 기간을 축소함(3년이내 등)	2 (9.52)	6

(2) 델파이 2차 설문 분석결과

델파이 2차 설문에서는 아청법상 취업제한제도의 적정성을 묻은 1차 질문의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으며, 이어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총 9개의 문항으로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해 중요도 순으로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2차 설문에서는 23명 모두 회신하였으나, 전문가 중 2명은 설문 문항으로 제시된 개선방안 모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순위를 매길 수 없음을 알려 왔는 바, 실제 응답자는 21명으로 처리했다.

순위집계와 점수배정에 있어서는 1순위를 9점으로 시작하여 하향식으로 9순위를 1점으로 부여하여 응답자 수를 곱한 합계를 총 응답자수로 나누어 표시했다.

① 아청법상 취업제한제도의 적정성 의견 분석

2차 설문에서도 동일한 개방형 질문형태인 동 문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의사의 성범죄에 대해 더욱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두배이상 많은 것은 우리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를 반증한다’, ‘성범죄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사형 이상의 형벌이 있다면 그 이상을 벌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성욕은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기에 10년의 기간 지정은 무의하다’ 등이 있었다.

반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제재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취업제한은 자유형과 같은 형벌과는 달리 사회적 형벌이므로 보다 인권적인 측면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법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은 적절하나, 아청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 등 적극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임을 지적한 의견도 다수였다.

또한, 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견도 보였는데, ‘취업제한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10년이라는 년수는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인에 대한 과중한 제재로 보는 견해가 다수인 것 같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한편, 의료법을 통해 성범죄 의료인을 규제하자는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성범죄 등의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관리기구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의료인 면허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료법에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자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규정을 두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함으로써 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할 독립기구로서 면허관리기구의 신설과 성범죄자의 면허제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② 아청법상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 순위 분석

2차 설문결과에서도 1차와 같이 성범죄의 경중이나 형벌의 종류의 따라 차등있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전문가의 수가 가장 많았다. 분석 결과 성범죄의 경중이나 형벌의 종류의 따라 취업제한도 차등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평균 점수 7.2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를 아청법으로 처벌하지 말고 의료법에서 면허에 대한 제한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평균 5.19로 2위에 집계됐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본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은 아청법의 개선사항으로 무엇보다도 현행 취업제한 제도가 성범죄의 경중이나 형벌의 종류에 무관하게 10년간이라는 취업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자 개선과제이며, 아울러 의료인의 면허를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1차 설문에서는 2번째 순위로 많은 답변을 보였던 ‘취업제한 기관을 아동청소년이 출입하는 기관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은 평균 4.57로 2차 설문에서는 3위로 변경됐다. 또한 평균 점수 4.52를 보인 ‘아청법 개정 이후 성범죄자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는데 이것은 소급처벌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취업제한 기간을 축소하자는 의견(4.42점)’, ‘의사면허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자는 의견(4.29점)’, ‘성인대상 성범죄를 제외하자’와 ‘모든 직종의 직업군에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견(각 평균 3.29)이 있었다.

한편, 아청법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므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제외하자는 의견은 평균 3.29의 점수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각 문항별 응답 현황 및 순위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8> 델파이 2차 설문조사에 따른 순위 결과

<단위 : 명(%), 점>

아청법개선방안 회신 의견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점수
성인대상 성범죄 제외		5 (23.8)	2 (9.52)			1 (4.76)		3 (14.28)	5 (23.8)	3.29
아·동·청·소·년 출입 의료기 관으로 한정	2 (9.52)	2 (9.52)	1 (4.76)	3 (14.28)	3 (14.28)	2 (9.52)	2 (9.52)	4 (19.04)		4.57
‘아 청 법’이 아닌 ‘의료법’ 으로 처벌함	5 (23.8)	2 (9.52)	3 (14.28)	1 (4.76)		5 (23.8)			1 (4.76)	5.19
독립적 의사 면허관리기구 신설	2 (9.52)	3 (14.28)	3 (14.28)	2 (9.52)	1 (4.76)		3 (14.28)		1 (4.76)	4.29
모든 직종의 직업군에 동 일 적용함	2 (9.52)		2 (9.52)	3 (14.28)	2 (9.52)	1 (4.76)		1 (4.76)	3 (14.28)	3.29
제한을 단계 적으로 실시 (1차 경고, 2 차 취업제한)	1 (4.76)	1 (4.76)	1 (4.76)		1 (4.76)	4 (19.04)		4 (19.04)	1 (4.76)	2.62
성범죄 경중 (또는 형벌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 처벌	6 (28.57)	8 (38.09)	2 (9.52)		4 (19.04)					7.29
아청법 개정 이후 성범죄 자로 한정함	2 (9.52)		1 (4.76)	6 (28.57)	2 (9.52)	2 (9.52)	3 (14.28)	1 (4.76)		4.52
취업제한 기 간을 축소함 (3년이내 등)	1 (4.76)		5 (23.8)	2 (9.52)	2 (9.52)		6 (28.57)		2 (9.52)	4.42

한편, 기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아청법 개정을 위한 추가의견이나 조언에

대한 요청에 “성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위반행위에 따른 적절한 수단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제재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체적 범죄행위에 따라 제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아청법의 목적, 취업제한의 목적과 구체적 수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주를 이루는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형평성 측면에서 의 문제점 고찰과 그 개선방안의 제시는 의료분야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조사과정에 의지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델파이 조사기법의 특징상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미래를 예측하는 관계로 최선의 예측이나 해결책이 제외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 진행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여 ‘기타 의견’의 적극적인 개진을 요청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노력했음을 밝힌다.

2. 문제점

1) 전문가 직종간 형평성 측면

델파이 연구결과 아청법상의 취업제한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직업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문항에 답한 응답자 21명 중 4명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3번째 제안순위로 나타났다. 2차 설문에서는 비록 개선순위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사라는 전문가 직역임을 이유로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같은 원칙으로 다른 전문가 직종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의견이 개진된 배경에는 현행 아청법 제56조제1항을 볼 때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변리사, 세무사 등 타 전문가직역은 취업제한대상 및 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인과 의료기관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전문가 직역으로서의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변호사나 성직자, 교수 등 타 전문가 직역에 있어서는 비록 성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이나 성범죄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을 제외하고는 아청법에 의해 취업제한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평등의 원칙이라 함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기회균등과 자의금지”로서(권영성, 2008),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다(헌법재판소 1989. 1.25. 선고 88헌가7 결정).

그러나, 이러한 법 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상 취업제한 결과에서의 형평성 차이는 우리나라 최대 전문직으로 손꼽히는 변호사와 의사에 의한 성범죄의 사례를 대비해 보면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1) 의사에 의한 성범죄 사례

사례 1 : 의사에 의한 성인대상 성범죄(성추행) 사건
사건관계(헌법재판소 2013헌마786사건)

2011년 이혼한 의사 A는 우연히 병원 근처 술집인 'OO바'를 찾았고, 곧 단

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장과 종업원들과도 친해지게 되었고 특히 종업원 C와는 외부에서도 만나는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C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A는 곧장 빌려줬지만, 이후 C는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 돈을 갚기가 어렵게 되자 A가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자청했다. A는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편해진다면 하는 마음으로 C의 제안을 승낙했고, C는 이후 가끔 A의 집을 방문해 가사일을 해 왔다.

그러던 중 그해 10월경 평소 C에게 호감을 느꼈던 A는 집안일을 하고 있던 C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했으나, C가 이를 뿌리쳤다.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A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거절의사를 받아들였다. 그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A는 C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C에 대해 야속함과 배신감을 느낀 A는 합의하지 않고 11월경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잊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 A는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으로 인해 의료기관 개원이 불가하다는 보건소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⁷⁾.

이 사례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A와 C와의 친밀한 관계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껴안은’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취업제한이라는 과중한 처벌이 내려진 대표적인 사례다.

사례 2 : 의사에 의한 노래방 성추행 사건

사건관계(헌법재판소 2013헌마786사건)

의사 B는 2012. 5월 지인 두명과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 갔고 도우미를 불러 같이 시간을 보냈다. 얼마 후 지인 한명은 먼저 돌아갔고 B도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래방을 나왔다.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2012. 9월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여 나가보니 노래방 주인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B를 고소했다는 사

7) 최승원 기자. “성추행 A씨, 의사로서 '사형 선고' 당한 사연”. <의협신문>, 2013.8.20.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58>, (최종확인: 2013.11.11)

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니 당시 노래방에 혼자 남았던 지인과 노래방 주인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지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되어 해당 노래방은 2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으며, 그 후 노래방 주인이 B까지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B는 경찰서 조사에서 노래를 권유하다보면 어깨가 닿을 수 있고 성추행을 한 것은 아니기에 몇몇한 심정으로 도우미와 어깨가 닿기도 하고 손목을 잡기도 했다고 시인했다.

성추행의 경우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B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B는 3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이 사건을 잊게 되었다. 이후 B는 집안 사정으로 한동안 대진의 근무를 하거나, 응급실에 근무하였고, 최근에는 요양병원에 근무하였는데, 2013. 10. 30. 요양병원장으로부터 성범죄 전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없다며 해고를 했다.

이 사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장에 기초하여 의사에게까지 약식명령의 벌금을 내린 경우로서, 어깨가 닿고 손목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성추행으로서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을 제한함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2) 변호사에 의한 성범죄 사례

사례 1 : 변호사에 의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사건관계(2005.10.31. 제2005-13호 변호사징계 결정)

징계혐의자는 2004. 12.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근처 여관에서 미성년자(16세) 유흥접객원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징계개시를 신청하였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사실로 인하여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손상한 점이 인정됨을 이유로 징계혐의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징계결정했다. 다만, 주취상태인 점,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지역 사회에서의 인지 등 사정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고려가 되었다.

변호사로서 누구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주취상태인 점,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단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사례 2 : 변호사에 의한 노래방 도우미 성추행 사건

사건관계(2007.10.15. 제2006-41호 변호사징계 결정)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2006. 2. 24. 23:00경 ○○음식점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이○씨(여, 29세)가 혐의자의 옆에 앉아 과일을 집기 위해 테이블 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을 느껴 동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는 변호사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으로 보아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징계혐의자를 용서함을 참작하여 ‘견책’ 결정하였다.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가로서 법률관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행위의 유형으로 보아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변호사에게 해악이 전혀 없는 ‘견책’결정을 함으로써 이러한 일반적 기대에 반하는 결정으로 자율징계의 기능작동을 의심케 하였다.

(3) 성범죄 사례비교를 통한 형평성 검토

위 검토한 사례가 비록 동일한 구조의 사건이 아닌 관계로 정확한 비교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적어도 애정관계가 성립이 되었다고 믿었거

나, 단순히 어깨를 스치고 손목만을 잡는 정도로 성추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의사들과는 달리 사례에서 보여준 변호사의 경우는 고의성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변호사 사례1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로서, 그 가벌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위에서 예시한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의사, 변호사간 성범죄 처벌 비교

구 분		주요내용	처벌내용	취업제한 적용
의사	사례1	성인대상 성범죄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자율징계 미청구)	적용(10년간 의료 기관 취업제한)
	사례2	노래방 성추행		
변호사	사례1	미성년자 성매매	자율징계:과태료 100만원 (형사처벌 확인불가)	적용없음
	사례2	노래방 성추행	자율징계:견책 (형사처벌 확인불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에 대한 가벌성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변호사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변호사법 제5조제1호)하지 않는 한, ‘과태료’ 또는 ‘견책’의 자율징계를 받은 이 사건 이후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특히, 아청법상 취업제한 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반면, 의사의 경우는 변호사에 비해 유사한 정도의 성추행 사실만으로도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실질적인 면허제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산부인과, 성형외과, 내과 등 환자 신체에 대해 일대일 접촉이 수반되는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성추행범의 성립이 결정되는 관계로 취업제한이라는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타 전문가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다만, 텔파이 조사결과와 같이 ‘의료인 이외 모든 직종의 직업군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타 전문가직역을 취업제한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범죄 의사에 대한 취업제한의 형식이 아닌,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의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법체계적 타당성 측면

2013. 9. 27.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장성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의료인의 성범죄로 인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취업제한의 조치는 아청법의 입법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의료인의 자격 및 지위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델파이 개방형 설문에서 3명의 응답자들은 각기 i) “의료법상의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 범죄를 확대하여 성범죄를 포함한 일반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의료인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ii) “의료인이 의료행위 등을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면허를 취소하고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의 재발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 영구 퇴출할 필요가 있음”, iii) “의료인의 취업제한 규정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의료인의 취업제한은 곧 면허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행 의료법상 면허정지·취소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의 의견을 밝혔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면허관리 필요성 의견을 준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의료법에 의료인의 성범죄를 추가하여 면허제한사유로 하고, 취업제한을 의료법상 면허정지·취소규정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서, 의료법상 면허의 제한과 아청법상의 취업제한은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며, 상호 독립적으로 존치하여 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가 가능할 것이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예외(의료법 제33조제1항 각호)사유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에서만 그 의료행위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의료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곧 해당 의료인의 면허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면허제한의 효력을 갖고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체계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부여자격과 유지요건에 대한 통합적인 규정체계를 갖고 있는 의료법으로 일괄하여 규정하고, 여기서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측면

비례의 원칙은 어떠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비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그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택한 직업을 어떠한 제약아래 수행하느냐의 관점이나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도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이러한 제한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제약이 아닐 수 없어,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헌재 1998. 3. 26. 97헌마194)한 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은 더욱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취업제한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은 객관적 사유에 해당되므로, 결국 의사 성범죄자에 대한 면허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취업제한 제도 역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사례에서와 같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라든지,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을 받은 경우처럼 경미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10년이라는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비례의 원칙에 관한 사법 판단을 보면, i)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균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2007. 11. 29. 자 2006헌가13 결정, ii) 은닉, 보유·보관된 당해 문화재의 필요적 물수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제81조제4항등위헌확인 사건에서 ‘행위자의 구체적 행위 태양이나 적법한 보유권한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여지를 박탈하고,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2007. 7. 26. 자 2003헌마377 결정, iii)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2004. 12. 16. 자 2003헌가12 결정이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거나, 행위자의 구체적 행위 태양이나 적법한 보유권한의 유무 등 사정에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몰수케 하거나, 특정의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과잉금지(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인데, 이를 아청법상 취업제한에 대입해보면 경미한 성범죄이든 중한 성범죄이든, 그리고 의사의 성범죄 유형 및 비난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한 성범죄자라는 사실 하나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성범죄자인 의사 누구에게나 10년의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한편, 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지속성과 후유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제도는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으나(이정훈 외 2명, 2012), 비례의 원칙의 내용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 균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의 최소성은 유지되어야

할 것인 바, 아동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는 의료기관(노인요양병원 등)과 아동청소년을 진료하지 않는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분야의 의사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인대상 진료까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의 최소성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아동법상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한 한 연구에서도 “재범의 위험성과 대상범죄의 경중을 더욱 세분화하여 그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와 수신인의 범위를 차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정보의 수신인이나 열람권자의 범위와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일반적 신상공개·열람제도는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박경철, 2011).

4) 소급효금지 위반 측면

성범죄를 범한 의사를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한 2012. 2. 1. 개정 법률의 부칙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법시행일인 같은 해 8월 2일 이전에 성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8월 2일 이후에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취업제한규정에 적용되는 소급처벌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시 법률 제11572호로 개정(2012. 12. 18.)하면서 부칙 제7조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잡으면서도 이전에 범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소급입법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

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소급의 원칙은 행정법규에 있어서도 적용되는데,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 등의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아청법의 시행일인 2012. 8. 2.이전부터 성인대상 성범죄가 포함된 2010. 4. 15.까지 성범죄를 범한 자들의 경우에는 행위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2012. 8. 2.이후에 판결이 선고되는 사정 하나만으로 갑자기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병행해서 받게 되는 소급 처분 대상자가 되는 결과 나온다.

의사의 성범죄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이라는 규제는 분명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서의 형벌은 아니지만, 의사의 면허를 갖고 의료행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생활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형벌이자 사회적인 형벌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형벌과 별개의 제재수단이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안처분 성격의 취업제한에 대해서도 헌법상의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재범성향이 강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과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아동의 심각한 피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거의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에 위헌의 소지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이정훈 외 2명, 2012).

그러나, 재범성향으로 인해 보안처분이 장기화한다든지,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됨으로써 처벌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며, 소급처벌로써 수범자인 국민들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개선방안

텔파이 연구결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우선적으로 고쳐져야 할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첫째, 성범죄의 경중(또는 형벌의 종류)에 따라 차등있게 의사의 성범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아청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을 개정 또는 개선하는 방법과 둘째, 아청법상 취업제한 제도를 없애고, 대신 의료법에 의한 면허관리체계 내에서 의사의 성범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틀을 토대로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

2013. 11. 20. 국회 박인숙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7926)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제고하면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죄질의 경중을 감안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취업제한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죄질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등을 제한함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의 태양과 이에 따른 형벌의 과중을 고려한 결과로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금고형’ 이상에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직역에 대한 자격제한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서도 ‘금고형’이상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호(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변리사

법 제4조(결격사유) 제1호(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제2호(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제2호(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1호(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의사법 제5조(결격사유) 제4호(이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자격이나 지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금고 이상의 자유형부터 취업제한이 부과된다면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에 의해 벌금형이 결정되는 경미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까지 10년간의 일률적 취업제한이 부과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2. 8. 2. 시행 개정 아청법의 부칙 조항에 의해 행위시에 처벌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비록 성범죄를 범한 의사라고 하지만 소급입법에 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범죄와 형벌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도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현행 아청법 제56조제1항에서의 ‘10년’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개정하여 처분권자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년이내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취업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대통령령, 부령 등)에 위임하여 입법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의 입법 형식을 의료법에서도 발견할 있는데,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의료법 제66조제1항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라고 정하고, 이어 제68조에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의료법에 의한 성범죄 의사 면허규제

텔파이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예측한 개선방안 중 의료법에 의한 해결방안은 행정처분대상 범죄를 확대하여 의사에 의한 성범죄를 결격사유,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에 포함하여 의료인의 면허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직무(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의한 성범죄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에 의한 성범죄를 의료법상 어떻게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19대 국회에서 의료인의 성범죄를 면허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해결방안으로 의사의 성범죄를 의료법에서 규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행 의료법의 체계내에서 의사의 성범죄를 ‘의료인의 품위훼손’행위로 규정하여 기존의 자격정지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의료법상 면허를 취소토록 함은 아청법상 취업제한의 경우와 같이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으며, 현행 규정상 ‘금고’이상의 엄격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 벌금으로 종결되는 성범죄 사건들은 면허의 취소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게 되어 적절한 규율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나 형벌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도 자격정지가 더 유리할 것이다.

의사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기 위한 품위훼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직무 내외를 불문’할 것이 요구된다. 의료법 이외 다른 전문가 영역에 있어서의 품위 훼손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i)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변호사법 제91조제2항제3호), ii)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1항제4호), iii)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5호), iv)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5조제4호)와 같이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징계사유 또는 해임·해촉사유로 삼고 있음을 참고하여 의사에 대해서도 의료법에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성범죄를 범한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진료와 무관하게 발생한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더욱이 아청법상 10년의 취업제한을 폐지하고 의료법상 면허제한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인만큼 적어도 ‘1년’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소하다는 문제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몇 년의 기간동안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 여기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전문가직역과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표 6>과 같이 변호사의 경우 ‘3년이하의 정직’, 변리사와 회계사는 각 ‘2년이내’의 직무정지, 공인회계사는 ‘2년이하’의 직무정지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면, 의사의 경우에는 2년 혹은 최대 3년이내(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기간의 최장이 3년임을 고려함)의 규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논의될 수 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⁸⁾ 중 일반강제추행의

경우 6월~2년을 기본으로 삼고, 가중처벌의 경우 1년6월~3년으로 정하고 있음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의료법 제66조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자격정지의 기간을 1년이내의 범위로 정하는 것과 달리 의료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은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2011. 4.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10609호, 시행 2012. 4. 29)으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요구권이 부여되고, 이를 위한 윤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약사법상에도 이와 동일한 구조의 규정이 존재한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고(약사법 제79조제2항),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79조제2항제1호 중 윤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약사법 제79조의2).

또한 약사법시행규칙은 「약사윤리위원회 또는 한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윤리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약사법시행규칙 제6조제7호). 즉, 약사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약사윤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마련한 윤리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전제로 자격정지 처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구조를 참고하여 의료법령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때 윤리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단체 스스로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자율정화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법에 의한 규율보다 더욱 순응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8) 성범죄 양형기준(<http://sc.scourt.go.kr>) 2013. 4. 22. 수정, 2013. 6. 19. 시행.

아울러 이러한 입법방식은 향후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 기능을 강화시켜 점진적인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의 초석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표 10> 의료법 개정방안

현행 의료법	개정안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u>1년의 범위</u> 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u>1년의 범위(단, 제1호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u> 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u>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u>	1. <u>의료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u>
2. ~ 10. <생략>	2. ~ 10. <생략>
② ~ ⑤ <생략>	② ~ ⑤ <생략>

VI. 결론

의사는 국내 최고의 전문직 중 하나로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그 어느 직종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합당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의사에 의한 일련의 성범죄 사건은 결국 의료인의 면허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져 아청법에 의한 취업제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규정까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위 ‘도가니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아청법상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의 끔찍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에서 개정된 취지임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 비례원칙의 정도를 넘어섬으로 인해 부차적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된 것이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도 당연히 단죄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전문가로서의 직역에 대한 규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전문가직종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급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위당시에 처벌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처벌받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상 취업제한에 있어서는 2010. 4. 15. 이후부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시행된 2012. 8. 2. 이전에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의사에 대해서는 2012. 8. 2. 이후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적용됨은 법률을 과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전문가들을 통한 델파이 연구로 의사 성범죄 처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는데, 연구결과 현행 아청법상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아동·청소년의 보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의 사유와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도를 넘어선 부적절한 규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응답자 23명중 16명, 69.57%).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성범죄의 경중이나 형벌의 종류에 따라 취업제한도 차등있게 해야 한다, 둘째,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를 아청법으로 처벌하지 말고 의료법에서 면허에 대한 제한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그 중요도 순에서 각각 1, 2위였음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본권 제한에 관한 입법의 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식처럼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으로 처벌되는 경미한 성범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위의 비난가능성과 처벌의 경중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탄력적인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다른 전문가 직역에 있어서의 자격제한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을 경우에 취업제한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아청법의 부칙 제7조도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법이 의료인의 면허 부여 및 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법인 점을 고려하여 아청법과 같은 개별법에서의 취업제한제도로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지 말고, 의료법상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성범죄와 같은 ‘직무 이외의 품위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면허를 제한(자격정지 기간을 3년의 범위내로 함)할 것을 제시하면서 이에 관한 입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개선방안들이 활용됨으로써, 환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사들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를 다하고 이에 합당한 대우와 권리가 부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 김옥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201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김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체계와 성폭력 피해자 구분에 따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11.10
- 노승용. 텔파이기법 : 전문적 통찰로 미래 예측하기. 2006.
-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성폭행 등 회원 2명 ‘3년 권리정지’ … 협회 최고 징계수위 결정”. 2008. 5. 20.
- 박경철. 최근의 성범죄 대응방안의 헌법적 문제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33권, (2011. 6)
- 박승일. 군 징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육군 징계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2006.
- 심영주, 이재경. 회원통합을 위한 자율징계권의 바람직한 방향. 의료정책포럼 2006;4(2)
- 이은희. 대한의사협회 회원자율징계제도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2006
- 이정훈, 원혜옥, 황태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및 취업제한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2-43
- 임병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 채근직.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0
- 최승원 기자. “성추행 A씨, 의사로서 '사형 선고' 당한 사연”. <의협신문>, 2013. 8. 20.
- 최영희 국회의원 보도자료. “성범죄자, 의사면허 취득 제한한다!” 2011. 9. 6.
- 한남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형법상 성범죄 규정과 특별법상의 성범죄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교정복지연구 제14호, 2008
- 현두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0

부 록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제한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법윤리를 전공하고 있는 김상구입니다. 저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점이 없는지를 짚어보고,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합리적인 면허제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죄질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입법 또는 이중처벌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제한의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아청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전문가들의 고견을 토대로 찾아보고, 나아가서 의료인에 대한 합리적인 면허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전화방식으로, 총 2회에 걸쳐 설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문 내용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설문지는 단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목적 이외에 어떠한 형태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013. 11. 4.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연구자 김상구

[1차 질문]

----- (응답자에 관한 정보) -----

1. 성별 [남 ☐ / 여 ☐]
2. 연령 [20대(20-29) ☐ / 30대(30-39) ☐ / 40대(40-49) ☐ /
50대(50-59) ☐ / 60대(60-69) ☐ / 70대 이상 ☐ /
3. 직업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2012. 2.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합니다)이 개정되어 시행중인 바, 개정 당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장소로 ‘의료기관’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모든 종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현행 동법 제56조제1항).

즉, 아동, 청소년이 아닌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벌금, 징역 등)나 경중에 상관없이 그 대상에 포함되며,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아동청소년의 출입과 무관한 모든 종류의 의료기관(병리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등)을 포함하여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이 법의 특징입니다.

반면, 의료인이 아닌 다른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종교인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동법이 규정하는 장소 이외에는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아청법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끝.

[2차 질문]

안녕하십니까?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제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중인 김상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동 연구에 대한 1차 델파이 설문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차 델파이 조사에서 23분께서 회신해 준 내용을 분석하여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에서 진행한 개방형 질문의 답변 의견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개진한 의견을 취합, 정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1.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아청법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설문결과

☞ 적절함 : 3명

☞ 적절하지 않음 : 20명

(단, 10년이상 취업제한 등 좀더 강력한 법규제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4건이 포함되었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음. 이를 반영할 경우 ‘적절’ 7명, ‘부적절’ 의견이 16건임)

이와 같은 설문결과에 대한 귀 선생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설문결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묻는 설문에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래 표와 같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중복답변을 반영하여 회신결과를 나열한 것이오니, 개선방안의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회신 의견	순위
아청법 개선방안	성인대상 성범죄를 취업제한사유에서 제외함	
	취업제한 기관을 아동청소년 출입과 관련된 의료기관으로 제한함	
	의료인 취업제한 규정을 ‘아청법’이 아닌 ‘의료법’에 규정함	

	독립적인 의료인 면허관리기구를 신설, 성범죄 의료인을 단죄함	
	의료인 이외 모든 직종의 직업군에 동일하게 적용함	
	제한을 단계적으로 실시(1차 경고, 재위반시 2개월 취업제한 등)	
	성범죄의 경중(또는 징역, 금고, 벌금 등 형벌의 종류)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단계적으로 함	
	취업제한 대상을 아청법 개정 이후 성범죄자로 한정함	
	취업제한 기간을 축소함(3년이내 등)	

※ 기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아청법 개정을 위한 추가의견이 있으시거나,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nishment For the Doctor's Sexual Misbehaviors : Focused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In recent years, many sexual crimes by the doctor known through the media have left the large wound to the people who have had great trust and respect for the doctor. They are followed by the legal revision to restrict the doctor's license.

It is true that we have had unfamiliar system to prohibit doctors to work in hospital for ten years due to the doctor's sexual crimes. That has been proposed by the former lawmaker Choi, Young - Hee.

But, it is the problem to trigger the debat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restrict employment in hospital for ten years or not regardless of the cruelty(even if the case of minor sexual abuse) and the grade of punishment. Some people argue that it is absurd to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it does not meet equity in comparison with other professional occup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problems in punishment for the doctor who had committed sexual crimes compared to other professional occupations and to suggest the ways to improve that problems.

This study has been done by the book research(reference) and the

Delphi technique. The book research is to find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o prove the equity between the professional occupations. it is referred overseas legal case for the sexual crimes.

The Delphi technique was used to diagnose the problem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over regulation for the doctor's sexual crimes. Research were surveyed to total 23 experts for three weeks from 11(Nov.)/4, 2013 by 11(Nov.)/22, 2013.

As a result, 16 people (69.57%) out of 23 person who responded are saying tha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physicians to stop working in the hospital for 10 years according to law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regardless of the type and severity of punishment.

As an improvement, it is followed in order that 'to differentiate the employment restriction period regard of the type and severity of punishment(8 people)', 'to limit to the institution where children and the youth can be accessible(5 people).', 'to exclude the sexual criminal cases for the adult women(4 people).', etc.

In the second survey, being shown all the answers which is suggested as an improvements, every person was requested to rank the importance in the 9 improvements. As a result, we can gain two major improvements. The first is one that most people have thought what we should do is to limit employment restriction gradually depending on the type and severity of punishment. And the second one is to regulate the physicians under 「The Medical law」 instead of existing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s a result, the responded experts are pointing out the problem that

the existing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does not meet equity in comparison with other professional occupation and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ohibi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and it is needed to be fixed in prompt. In addition, they are emphasizing the necessity that the regulations of the physician license should be managed by not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but 「The Medical Law」 .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two kinds of measures to be improved. First, employment restriction should be applied by the type and severity of punishment in case of sentenced penalties more than imprisonment and we should make a flexible employment restriction period within 10 years and let the person having an authority determine the appropriate period in consideration of comprehensive reason and surroundings. Second, it proposes legal amendments for corresponding to the ineligibility in case of conducting undermine the dignity regardless of the duties of physician so to regulate the physician's license through the medical law

In addition, the responded experts are suggesting many ways like installing independent medical licensing authorities as reasonabl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developed countries. And related in-depth study must be carried out continuously to to set up a certain kind of korean standard physician guidelines refer to the GMP, in UK.

The key words : sexual crimes,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employment restriction, equ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edical license, undermine the dignity